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7일 제출한 산업용 LNG특소세 면제 건의(석유 협회보 2002년 1·2월호 참조)에 이어 지난 2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재건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편집자 주 -

산업용 중유 특소세 면제 건의

대한 석유 협회

최 근 산업용 LNG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액을 현행 kg당 40원에서 30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귀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음.

현재 장기간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세계 개편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변경은 우선적으로 정부 세제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폐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또한, LNG에 대한 세금 인하는 상호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중유와의 판매단가 차이를 세금 인하를 통하여 보전하여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율·공정 경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사료되며, 특히 중유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의 반발을 초래할 것임.

더구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중유의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 세금인하는 중유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LNG 수급문제 발생 등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LNG 세금 인화로 중유 수요가 LNG로 급격히 가속화될 경우 국내 공급 과잉인 중유의 저가 수출이 촉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국내 석유산업의 존립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이에 우리 업계는 LNG와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중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LNG와 동일 기간/폭만큼 특소세를 인하여야 세제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재차 요청함.

즉, LNG특소세 인하여 따라 열량을 감안한 양 에너지원간 가격경쟁력 변화가 없도록 LNG 특소세 인하규모 10W/kg(=0.77W/천Kcal)과 동일하게 중유 특소세도 8W/l (=0.77W/천Kcal)인하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중유세금규모를 감안할 경우 중유 특소세 8W/l 인하는 불가한 바, LNG 특소세 인하기간만큼 중유 특소세를 면제하여 주시기를 건의함. 